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5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6. 12. 2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김주완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소외 B(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과의 신용보증 약정에 의해 채무자의 C은행 채무를 변제한 변제자입니다.

피상속인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채무자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6. 12. 29.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의해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익자입니다.

2. 집행권원의 취득(구상채권의 범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E 에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영위했던 채무자와의 사이에, 2014. 6. 24.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20. 6. 19.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 채무자는 원고 발행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 차용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19. 12. 17. 이자연체로 인한 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0. 3. 17. C은행에 150,894,108원을 대위변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차전14267 구상금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채무자는 원고에게 150,357,915원과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

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에 관하여

가. 변제자대위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이 경우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별개의 권리이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 32418판결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인 C은행이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2014. 6. 26.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대출금 채권은 변제자인 원고가 취득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위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초과

채무자는 원고 등에 대한 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는 피고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인 2016. 12. 29.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6. 12. 29.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27213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라. 원상회복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상속)재산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마. 상속관계

피상속인 D의 상속관계를 확인한 이후 청구취지를 변경하겠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이 사건 상속 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피상속인 D이 2016. 8. 18. 사망하고, 피고(처, 상속지분 9분의 3), G(1녀), H(2남), B(3남, 위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9분의 2)에게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예산군 I 대 536㎡

2. 충청남도 예산군 J 대 60㎡

3. 충청남도 예산군 I, J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K]

일반철골구조 데크슬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1층 99.4㎡

1층 21.65㎡

